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및 정보 조회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2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및 정보 조회	3
2.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1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6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2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재에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

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 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및 정보 조회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미리 직권신청 계획안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3항),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u>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u>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정보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⑤ (생략)

<신 설>

-----,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제
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의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

<신 설>

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를 둔다.

⑦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신청 계획안을 보고받은 보장기관의 장(보장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 한한다)은 해당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을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소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이 시·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7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해당 직권신청 계획

⑥ <u>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u>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u>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심의를 요청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⑩ <u>시·도사회보장위원회</u> 및 <u>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u>----- ----- ----- -----.
--	---

나.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1)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2)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

1)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 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 제2조제3항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신청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현행법 제9조의24)에 따라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발굴된 위기가구 구성원을 직권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직권 신청 계획을 사전에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선 개정안에 따라 직권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는 위기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자살위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신청 절차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안내만으로는 적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발굴 이후 신속하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기가구라 하더라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기정보의 종류에 따라 위기 정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구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점에서 직권신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순히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기보다는 자살 시도, 심리적 도피, 의사소통 곤란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직권신청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근 5년 위기가구 발굴 현황 >

(단위: 건, 2026. 5. 1. 기준)

연도	발굴 대상	지원 소계	지원 구분	
			공공 지원	민간 지원
2021년	1,339,909	663,874	165,195	198,679
2022년	1,208,086	606,101	129,799	446,302
2023년	1,388,689	686,439	131,813	554,566
2024년	1,423,466	831,660	252,425	579,235
2025년	1,371,215	875,525	296,602	578,923

* 자료: 보건복지부

□ 다음으로, 개정안은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가 수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는 개인의 재산 상황과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금융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넓고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 간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신청 대상의 범위 및 정보의 이용 목적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직권신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권신청은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신속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오히려 급여 제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실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사례관리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개별 직권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음.

따라서 직권신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방식이 사전 심의가 되어야 하는지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금융기관등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같은 조 제2항5)에서 ‘금융기관등’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⁶⁾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6) 소병훈의원안(제2218296호), 이수진의원안(제2218940호), 박성민의원안(제2219592호), 남인순의원안(제2219842호)

2.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3조의3(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공무원임용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

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⁷⁾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7) 「공무원임용령」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 균형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 ④ (생략)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극행정과는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 직권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연계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심신장애,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등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신청하여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보호하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본인의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직권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지원대상자 보호라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직권신청 확정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자산 및 금전적 거래내역 등을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로서, 비밀보장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불가피하게 복지급여의 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명의인 동의의 예외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의 지원대상자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부양의무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거래정보의 취급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예외적인 금융거래정보 조사·취급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조사·결정 권한이 시·군·구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용은 신속한 지원

취지와 배치되며 시·군·구 소속 심의기구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또한, 의사결정능력 미약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실무상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협조를 통한 서면 동의 절차가 정착되어 있어 예외를 확대할 경우 혼선 우려 등 일부 의견* 존재.

* 경상북도

문 의 처
02)6788-5498